서울특별시 블록체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1166호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다. 제출일자 : 2019년 10월 16일

라.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2. 제안이유

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반 산업의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블록체인관련 기업의 성장, 전문 인재양성, 글로벌 진출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센터의 개소가 필요하며 이러한 센터를 민간의 전문역량을 활용해서 운영하기 위해 해당 센터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창업지원 조례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
 - 글로벌 TOP 5 창업도시 서울 추진계획
 - 블록체인 창업 거점공간 조성계획
- 추진 필요성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첨단 IT신기술 분야 창업기업 발굴 등 복합적인 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을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견실한 창업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다. 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 운영
 - 입주기업 심사·선발 등 창업기업 보육지원
 - 창업보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 창업지원을 위한 행사기획, 관리, 홍보 및 교류·협력사업
 - 졸업기업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 시설물 유지관리, 안전대책 수립 시행
- 블록체인 인재양성을 위해 수준별 기본, 고급, 심화(창업) 교육 운영
 - 블록체인 등 미래기술 발전 대응 전문분야 전 과정
 - 블록체인 기업창업 지원을 위한 각종 세미나 및 행사 추진
- 블록체인 민간기업. 연구소 등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방안

-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 우수대학이 입지한 마포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등
- 글로벌 블록체인기술 기업 유치 및 연계 방안

라. 민간위탁 개요

○ 위 치 : 마포구 도화동 566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 건축규모 : 연면적 2,014m², 지상8층,11층

○ 시설개관 : 2019.12월 예정

○ 기 능 : 공간제공, 보육 프로그램 운영, 인재양성, 사업화 지원 등

○ 보육규모 : 독립형 보육실 40실, 교육실 1실, 회의실 12실 등

○ 소요예산 : 1.098백만원 (2020년 기준)

○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위탁)

마. 민간위탁운영평가 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동의안의 개요

 동의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차세대 IT인프라로 손꼽히는 블록체인1)
 기반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블록체인 전문 기업과 인재 육성, 글로벌 진출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되었음.

나. 블록체인지원센터 조성

- 서울시는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2018.9)에 따라 블록체인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육성과 인재양성 등을 위해 '서울블록 체인지원센터'(마포구 경찰공제회 자람빌딩)를 설치·운영할 계획임.
 - 당초, '개포 디지털혁신파크'에 서울 글로벌 블록체인센터를 건립해 120개 기업의 입주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해당부지에 혁신학교 설립이 확정되면서 서울창업허브 인접 지역에 블록체인 지원센터를 조성하게 되었음.

¹⁾ 블록체인(Blockchain): 관리 대상 데이터를 분산 관리 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블록으로 구분하고, 각 블록을 고리 형태로 서로 연결하는 형식의 데이터 목록이며 네트워크상에서 다수의 합의가 필요하여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고안된 위변조 방지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로, 공공거래 장부라고도 부름.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 〉

○ 시 설 명 : 서울특별시 블록체인지원센터

○ 위 치 : 마포구 도화동 566(경찰공제회 자람빌딩 8층,11층)

○ 개 관 : 2019. 12월 예정

○ 규 모 : 연면적 2.014㎡

○ 임 대 료 : 보증금 500백만원, 월 임대료 및 관리비 95백만원

○ 기 능 : 블록체인 창업기업 육성, 보육프로그램 운영,

인재양성 교육. 네트워킹·코워킹 공간 제공 등

○ 보육규모 : 독립형보육실 40실, 교육실(1), 회의실(12) 이상 등

○ 시 설 비 : 리모델링비 20억 279만원(시비 100%)

-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조성과 운영을 위해 2019년에 신규사업으로 리모델링 시설비(20억 279만원)와 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14억 270만원) 등을 포함해 모두 36억 2,213만원이 편성되었음.
 - 현재는 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의 지연으로 당초 계획(2019.12) 보다 개관일이 늦춰질 전망이며, 이에 서울시는 지원센터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운영과 관리를 위해 용역사업자²⁾와 계약해(2019. 11~ 2020.6) 올해 말까지 입주기업을 모집할 계획임.
 - 이로 인해 2020년도 상반기는 기존 용역시업자가 지원센터의 운영관리를 전담하고, 하반기부터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임.

²⁾ 주식회사 오픈놀, 서강대학교산학협력단 컨소시엄과 8억 8백만원에 장기계속계약 체결하였으며, 1차 사업 완수일자는 2019년 12월 31일이며, 최종 완수일자는 2020년 6월 30일임.

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 동의안은 블록체인 관련 기업의 성장과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 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조성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 위탁사무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축 ▶인재양성을 위한 수준별 교육 운영 ▶지원센터 운영 등과 같은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이므로, 블록체인 관련 기업의 성장, 전문 인재 양성, 글로벌 진출 등에서 전문역량과 경험, 네트워크를 갖추어야 함.
- 블록체인과 같이 성장가능성이 높은 첨단 IT신기술 분야의 창업기업 발굴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서울시가 직영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므로, 민간의 전문 인력과 축적된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시설 준공 이전 준비 단계부터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민간위탁 절차임에도, 한시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곧이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의회의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회피하고, 사업의 안정성과 운영 효율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추후에는 이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민간위탁금에 편성된 임차료와 관리비가 연간 11억 4,840만원 (평균 월 9,570만원)에 달해 지원센터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시유재산 활용 등을 통해 과도한 경상적 경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인건비에 있어서도 전담인력 5명(5명 x 500만원 x 12개월)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한 바, 수탁사업의 규모·내용·운영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제 투입될 인력의 적정 규모를 산정한 필요가 있음.
- 한편,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는 동의안과 예산안은 법령이나 조례 제·개정,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회 동의 과정 에서의 보류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회기에 제출하여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집행부가 수립한 자체 지침을 준수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시우	02-2180-8056

[참고자료 1]

블록체인지원세터 층별 공간구성(안)

1. 창업보육공간

8 층. 층별면적 1006.78 ㎡

○ 블록체인 창업기업을 주 타킷으로 4~8인실로 기본공간을 구성하되, 기업의 규모 및 특성에 맞게 보육공간 가변 가능





〈 창업보육공간 〉

2. 기업보육공간

11 층, 층별면적 1006,78 ㎡

○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 및 중견기업 타킷으로 4~8인실로 기본공간을 구성하되, 기업의 규모 및 특성에 맞게 보육공간 가변 가능공용





〈 기업보육공간 〉

3. 회의 및 교육공간

8층. 11층 440 m²

○ 입주기업 컨설팅, 세미나, 교육공간과 휴게 공간 등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구성





교육장. 회의공간 등

[참고자료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기존 위탁사무의 신규 민간위탁으로의 처리 기준

- 관련 절차를 통해 민간위탁으로 이미 추진 중인 사무는 그 사무 수행을 중단하지 않는 한 당초 위탁사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사무를 관리
- 다만, <u>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위탁사무는 종료된 것으로 보</u>고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함
 - · 위탁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 ·예산지원형 ↔ 수익창출형. 시설형 ↔ 사무형
 - ※ 다만, 당초 신규 민간위탁 추진 시, 시설형·사무형의 위탁유형을 착오 분류한 경우에는 재위탁·재계약 추진 시 위탁 유형을 정정할 수 있음
 - ·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과 전혀 다른 사무를 추가하거나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 · 다수의 위탁사무를 통합하는 경우
 - · 위탁하는 공유재산을 추가하는 경우 등
 - · 기존 위탁사무를 두 개 이상의 위탁사무로 분리하는 경우
 - ·시설/시설, 사무/사무, 시설/사무로 분리시 각각 신규 추진
 - ※ 소관부서가 분리되더라도 위탁사무 자체가 분리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적용되지 않음(다만, 분리된 부서 중 주관부서를 정하여야함)
 - 기존 위탁사무의 수행을 1년 이상 중단하였다가 다시 위탁하는 경우
 - · 국가기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행하던 사무를 이관받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등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시기

시의회 동의(주관부서)

- 시의회 동의 대상
 - 동의 대상 : 해당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여부
 - ▶ 민간위탁 관련 추진절차(예산안 의결,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협약
 체결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사전 의회 동의 추진
-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제출절차 (시행규칙 §2②)
 - 주관부서별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한 의회 동의 추진
 - 의안 처리절차는 일반안건 처리절차에 의함
 - 의안 제출 → 접수 및 의안번호 부여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상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 → 지방자치단체에 이송
 - 안건 제출 서식 : 시행규칙 §2②

예산편성(주관부서)

-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편성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의회동의 → 예산안 의결 의무화
 - 사전절차 대상 : 민간위탁조례(제4조의3 등)에 따른 시의회 동의 대상 사무
 - ※ 동의안과 예산안은 같은 회기에 상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이나 조례 제·개정,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회 동의과정에서의 보류 등 불가 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시에 상정 가능